

1. 통관전신고대상 화학물질, 연0.1톤이상 신규물질 등으로구체화 안전관리대상 신고절차 및 안전기준 반영한 개정「통합공고」시행

화학물질 수입 시 통관 전 환경부에 등록 및 신고해야 하는 화학물질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또 안전관리 대상인 전기용품과 생활용품 수입 시 신고 절차 및 안전 기준을 정비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관련 법령 중 최근 신설하거나 개정된 수출입요건 및 절차를 반영한 「통합공고」를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합공고」는 여러 법률에 산재한 수출입 요건·절차에 관한 사항을 무역업자가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의 공고에 통합한 것이다.

개정 「통합공고」는 먼저 지난해 3월 공포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반영해 등록대상 화학물질, 신고대상 신규 화학물질, 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대상 품목을 반영해 새로 지정하거나 구체화했다.

구체적으로 통관 전 등록대상 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 ▲연간 0.1톤 이상 신규 화학물질,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로 세분화했다. 다만 기존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 유예기간에 등록하지 않고 수입하려는 경우엔 통관 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통관 전 신고대상 신규 화학물질도 ▲연간 0.1톤 미만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 심사를 면제받은 연간 0.1톤 이하 수입 신규 화학물 또는 기존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한 신규 화학물질로 규정했다.

아울러 기존 화학물질의 사전신고 및 신규 화학물질 신고 시 제출해야 할 서류에 ‘통제된 조건에서 제조·이동·사용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제96조의3(원료물질등의 요건확인절차)을 신설하면서 원료물질 등의 수출입요건확인 대상자가 매번 수출입 때마다 통관 전까지 품목별 수출입요령에 따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수출입요건을 확인받도록 했다.

한편 종자산업과 관련해서는 개정된 「종자산업법」을 반영해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해 수입하려는 자도 수입 적응성 시험을 받도록 명시했으며,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신고 면제 대상 제품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강화한 안전기준을 제시했다.

자세한 내용은 본지 최신개정법령에서 확인할 수 있다.

2.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관세청공고 제2019-85호, 2019.7.17)

1. 행정규칙명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고시 제2019-2호, '18.12.27.)

2. 개정 사유

□ 용도 외 사용 등 위험도가 낮은 물품에 대한 사후관리 면제를 통해 업체 및 세관직원의 사후관리 업무 부담을 완화

3. 주요 개정내용

□ 사후관리 면제 확대 및 기간 단축(제11조 등)

○ 소액의 학술연구용 원재료·부분품의 사후관리 면제 확대

○ 내용연수가 짧아 타 용도로 사용 가능성이 낮은 학술연구용 기계·기구 등에 대한 사후관리 기간 단축

□ 사후관리기간 등에 대한 규정을 법령과 일치(제26조 등)

○ 원재료·부분품에 대한 사후관리기간 일치

○ 사후관리 위탁범위(반입기한연장 신고)를 명확히 규정

□ 사후관리 종결신청서 서식을 개정하여 유사서류 중복 제출에 따른 불편 해소(개정 별표 14호 서식)

4. 신규조문 대비표 : www.custracom.com 참조

5. 규제대상 여부 : 해당 없음

6. 시행일자 : 2019년 中

7. 의견제출 방법

○ 제출처 : 관세청 심사정책국 세원심사과

○ 담당자 : 유명재 사무관(☎ 042-481-7871)

○ 제출기한 : 2019년 中

○ 제출방법 : E-mail(yusangw001@korea.kr)

3.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종료에 따른 재심사 개시

(기획재정부공고 제2019-130호, 2019.07.15)

주식회사 디케이씨가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진출한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 종료재심사 요청에 대하여 무역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재심사 개시를 결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합니다.

1. 재심사 요청 개요

가. 요청인 : 주식회사 디케이씨

나. 요청일자 : 2019년 5월 15일

다. 요청 대상 물품

- 일본산 스테인리스스틸 후판(Stainless Steel Plate)으로서 기획재정부령 제578호 (2016.12.6.)에 따라 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인 물품

라. 재심사 요청의 주요 사유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2호)

2. 재심사의 주요사항

가. 조사대상 물품 : 요청대상물품과 동일

나. 조사사항 : 덤핑방지관세의 종료로 인하여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가 지속되거나 재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다. 조사 대상 공급자

- 일본의 NIPPON STEEL Stainless Steel Corporation, Nippon Yakin Kogyo Co., Ltd, JFSteel Corporation

※ 조사 대상 공급자로 선정되지 않은 기타업체가 자발적으로 조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재심사 대상 공급자로 선정될 수 있음

라. 조사기관 : 무역위원회

마. 조사대상 기간

- 덤핑률 조사대상 기간 :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다만, 추후 수출자 등의 회계기간 및 조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국내산업피해 조사대상 기간 : 2015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산업 피해 판정시점까지 연장될 수 있음

3. 재심사절차 진행계획

가. 재심사 개시일 : **2019년 7월 15일**

나. 조사기간 : 재심사 개시일부터 6월 이내

(관세법시행령 제70조제5항에 따라 4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다. 덤핑방지관세 부과기간 연장 여부 등 결정 : 재심사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 관세법 시행령 제7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기간 중 덤핑방지조치의 적용시한이 종료되는 때에도 재심사기간 중 당해 조치의 효력은 계속됨

4. 기타행정사항

- 본 재심사와 관련한 질문이나 자료제출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관	연락처	비고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세종시 갈매로 477 (전화) 044-215-4412, (FAX) 044-215-8075	덤핑방지조치 변경여부 결정
무역위원회 (산업피해조사과)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66, (FAX) 044-203-4815	국내산업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무역위원회 (덤핑조사과)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전화) 044-203-5877, (FAX) 044-203-4813	덤핑의 지속 또는 재발 가능성 조사

4. 국수·김치등 '신규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대상물품' 82개공개, 관세청, 원산지 증명 취약한 식품류와 주력 수출품 기계류 중점 선정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FTA 활용을 늘리기 위해 국내 제조·가공 사실만으로 FTA 원산지증명서를 쉽게 받

급할 수 있는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물품’ 82개를 올 7월 1일 신규 추가했다. 한류 열풍으로 수출 증가세를 이끌고 있는 김치, 면류 등 식품류와 소요 원재료가 많아 원산지 증빙에 어려움을 겪어온 철강·기계류가 주를 이룬다.

관세청은 우리 주력 수출품인 기계류와 원산지 증명에 취약한 식품류를 중점적으로 검토해 HS 10단위 기준으로 새로 추가한 82개 품목을 7월 17일 공개했다.

관세청은 7월 1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 시 국수·김치·삼푸 등 82개 품목을 추가해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물품은 총 243개 품목으로 늘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수출품목의 원재료, 공정 등과 관련된 모든 증빙서류를 갖추고 이를 관리해야 한다는 번거로움 때문에 인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소 수출기업은 FTA 활용을 꺼리는 게 사실이다.

이에 관세청은 2017년부터 ‘국내제조확인서’ 제출을 통해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 확인되면 재료의 원산지와 상관없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161개 품목을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물품으로 지정·운영해왔다.

국내제조확인서는 수출물품의 생산자가 해당 물품을 국내에서 제조했음을 확인해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김치의 경우 그동안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려면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등 재료에 대한 원재료 명세서(Bill Of Material), 구매내역서, 품목분류 확인자료, 원산지 확인자료, 원재료수불부와 제품수불부, 제조공정도 등 최소 7종의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하지만 이제 국내제조확인서만 구비하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물품이 늘어 우리 수출기업이 FTA를 더욱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함으로써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규원산지증명서간이발급대상물품(82개)】

HSK	품명	HSK	품명
1902.19-1000	국수	8414.59-9000	기타의 팬
1902.19-2000	당면	8414.80-1000	후드
1902.19-3000	냉면	8414.80-9190	그 밖의 기체 펌프(항공기용 제외)
1905.90-1040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8414.80-9210	기체 압축기
1905.90-1090	기타의 베이커리 제품	8414.80-9220	그 밖의 기체 압축기
2005.99-1000	김치	8414.80-9230	그 밖의 기체 압축기
2917.37-0000	테레프탈산디메틸	8414.80-9900	기타의 팬?후드 등
3305.10-0000	삼푸	8415.10-2010	벽형 공기조절기
3401.30-0000	바디클렌저	8415.10-9020	공기조절기
3904.22-0000	폴리(염화비닐)	8417.10-2010	철강 처리용 노나 오븐
3917.40-0000	플라스틱 연결구	8419.40-0000	증류기나 정류기
3918.9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매트나 바닥 깔개	8419.50-9000	열교환기
3920.51-0000	플라스틱(폴리메틸메타크릴레이트 재질 외의 아크릴중합체 것)으로 만든 판, 시트, 필름, 박, 스트립	8420.10-9000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
3923.21-0000	에틸렌중합체로 만든 포장대	8421.23-1000	제87류 차량의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필터)
4002.11-0000	스티렌-부타디엔 고무 라텍스	8422.20-0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4002.59-000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고무(NBR)	8422.30-2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봉합용·봉지용 기계

4009.21-0000	금속으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관?파이프?호스	8422.30-3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캡슐 취부용·레이블 첨부용 기계
4009.31-0000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호스	8422.40-4000	열수축 포장기계
4009.32-0000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호스	8422.40-9010	자동포장기계
5402.11-0000	아라미드로 만든 강력사	8422.40-9020	자동결속기
5402.20-0000	강력사	8422.40-9030	진공포장기
5503.20-1000	폴리에스테르의 섬유	8424.10-0000	소화기
5503.90-0000	기타의 합성스테이플섬유	8438.20-0000	과자·코코아·초콜릿 제조용 기계
7226.92-0000	냉간압연	8474.80-2000	조괴기(造塊機)·형입기와 성형기
7227.90-9090	그 밖의 합금강의 봉	8477.20-2000	압출기(플라스틱 공업용)
7306.50-0000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관 및 중공 프로파일(기타의 것)	8477.40-0000	진공성형기와 그 밖의 열성형기
7307.91-0000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플랜지(flange)	8477.80-0000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
7310.10-0000	용적이 50리터 이상 300리터 이하인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탱크·통·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	8479.82-1000	혼합기
7409.11-9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구리의 판·시트(sheet)·스트립	8479.82-4000	교반기
7409.21-9000	구리-아연합금(황동)으로 만든 판?시트(sheet)?스트립	8481.30-0000	체크(논리턴)밸브
7410.11-0000	정제한 구리의 박	8481.40-0000	안전밸브
7413.00-0000	구리로 만든 연선·케이블	8481.80-1010	밸브(전기작동식의 것)
7502.20-0000	니켈 합금 괴	8481.80-1030	밸브(그 밖의 자동 제어식의 것)
7604.21-0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중공(中空) 프로파일(profile)	8481.80-2000	탭·코크와 트랩
8302.30-0000	비(卑)금속제 차량용 부착구	8482.10-9000	볼 베어링
8302.42-0000	비(卑)금속제 가구 부착구	8482.20-0000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403.10-1000	보일러(유류를 사용하는 것)	8482.40-0000	니들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403.10-3000	보일러(가스를 사용하는 것)	8483.30-9000	베어링 하우스(bearing housing)
8413.30-9000	연료·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피스톤 내연기관용으로 한정한다(항공기, 기관차용, 선박용, 자동차용 제외)].	8483.50-9000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
8413.81-9000	기타 펌프(수영장용 펌프는 제외)	8507.80-0000	그 밖의 축전지
8414.30-1000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8514.40-9000	그 밖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품목별 활용 대상 협정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2의2] 참조

5. 對 터키 거래 미회수대금 발생시 변호사·상사중재원활용, KOTRA, 법적 대응방안 및 신규거래업체 주의사항 안내

터키와 무역 거래에서 대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라면 상사 중재원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KOTRA 이스탄불무역관은 최근 터키 기업과 무역거래에서 제때 대금을 받지 못하는 기업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금을 회수하기 위해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는 방법도 필요하지만, 현지의 상사 중재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시도해볼 만하다고 7월 17일 소개했다.

이스탄불무역관은 기업이 위임하면 변호사나 상사 중재원이 상대 기업에 서면 경고장을 송부하고, 대금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때는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변호사는 승소를 전제로 일정한 조건에 따른 보수를 받고 채권자의 입장에 서서 대금을 회수하기 위한 구제 행동을 하지만 중재원은 보수 조건과 관계없이 절차를 진행하므로 회수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변호사를 통한 서면 경고는 보통 6주가량으로 서면 결과를 30일 이내에 통지하는 중재원과 비교해 시간이 더 걸리고, 중재원보다 소송비용도 40% 정도 높지만 대금 회수율이 높아 활용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사를 선임할 때 현지 사정과 변수에 따라 최초 합의한 비용이 변동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협의하지 않은 조건으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피하고 거래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세부 조건을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6. 관세청 질의 응답 사례

【수입·FTA·원산지】

1. 한·EU FTA 직접운송원칙

<질의>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최초 선적된 물품이 중국 상하이를 경유해 인천항에 최종 도착한 경우 중국(경유)에서 발급한 '비가공증명서'를 구비해야만 '한·EU FTA 협정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답변>한·EU FTA 협정문 '원산지 제품'의 정의 및 행정협력의 방법에 관한 의정서 제13조(직접운송)에서는 "단일 탁송화물을 구성하는 제품은 상황이 발생하면 다른 영역에서 환적 또는 일시적으로 창고 보관되어 그 다른 영역을 통해 운송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제3국 통과나 창고 보관 시 추가 가공작업 없이(하역, 재선적 또는 제품을 양호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해 고안된 공정 이외의 공정을 거치지 않아야 함) 세관의 통제 하에 있었고, 그 상황을 경유국의 세관 등 권한 있는 기관이 확인한 다음과 같은 서류로 입증한다면 직접운송원칙을 충족했다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 위 조건을 충족했다는 증거는 수입당사자에 적용을 가능한 절차에 따라 관세당국에 다음을 제출해야 합니다(동 의정서 제13조 제2항 참조).

1. 제3국에서 원산지 제품의 환적 또는 보관과 관련된 상황의 증거
2. 수출 당사자에서 경유국을 통한 통과를 다루고 있는 단일 운송서류
3. 경유국의 관세당국이 발행한 다음의 증명서
 - 1) 제품의 정확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
 - 2) 제품의 하역 및 재선적 일자,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선박명 또는 사용된 다른 운송수단을 기재하는 것
 - 3) 제품이 경유국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를 증명하는 것

2. 한·미 FTA 제3국 발행 송장 거래

<질의>물품은 미국에서 직접 선적되며, 수출자는 홍콩에 있는 회사(B/L 및 INVOICE 등 선적 서류상 수출자)이고, 생산자는 미국업체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주체가 생산자일 경우, 수출자가 체약당사국인 미국이 아니라도 협정관세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답변>제3국 발행 송장 거래 시에도 협정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원산지증명서 작성에 권한 있는 자가 발행한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협정관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원산지증명서 수출자 란에 제3국의 수출자가 기재돼 있더라도 동 증명서상 한·미 FTA에 따른 거래당사자인 미국 내 생산자와 한국 수입자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고, 해당 물품의 미국 내 생산자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한 것을 원산지증명서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유효한 원산지증명서로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세율불균형물품 등의 감면세 적용물품 양도

<질의>「관세법」 제89조에 따라 제조(수리)공장으로 지정받은 공장에서 감면받은 항공기 부품을 다른 항공사에 양도할 수 있나요?

<답변>「관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적용 물품(반도체 제조용 장비, 부속기기 포함)은 용도 외 사용 승인, 양도·양수(임대) 승인, 폐기·수출 승인, 멸실 확인·추징, 합병·분할 합병 등의 신고, 종결 신청,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상 비치 및 사용내용 등 기록·관리의무에 관한 사항 등 사후관리대상입니다.

∴ 하지만 동법 제89조 제1항 제1호[항공기(부분품 포함)] 물품은 사후관리 대상이 아니므로 양도할 경우

에도 별도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수출·보세·환급·기타】

4. 외화수표의 반입

<질의> 외국 보험회사에서 보상금을 FEDEX 택배를 통해 외화수표로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사전신고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외화수표를 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답변> 외화는 사전신고가 원칙이며, 일반적으로 특송으로 지급수단을 받을 예정이면 외국에서 발송할 때 기표지에 'check'라고 표기해야 합니다.

∴ 또한 수취 전에 해당 특송업체에 외국환신고를 할 지급수단을 받을 예정이라고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 참고로 신고하지 않고 외화 등을 영수한 경우 반입 경위 및 금액에 따라 과태료 또는 조사의뢰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조세심판 결정 레【일본산 스테인리스 철강와이어인 쟁점물품이 덤핑방지관세 부과 대상인지 여부】

<결정 요지>

쟁점물품은 세번, 규격, 형태 등이 덤핑방지관세 부과규칙 제2조에서 정한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으로 보여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심판청구 대상인 거부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결정번호 : 조심2019관0030(2019.6.27.)

▷청구법인 : 000

▷주문 : 이 건 심판청구 중 가산세 관련 심판청구 부분은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은 000으로부터 2014.2.13.부터 2017.4.18.까지 000(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신고 번호 000 외 8건으로 수입하면서, 양허세율 0%인 HSK 7223.00- 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이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8.11.21. 청구법인에게 '감사원 확인서 대상물품 덤핑방지관세 대상물품 확인요청 메일' 및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시서'를 송부하면서, 쟁점물품이 15.39%의 덤핑방지관세를 적용대상인 HSK 7222.20- 0000호로 품목분류되는 것이 아닌지를 확인하도록 요청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8.11.28. 쟁점물품과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시서'상 물품이 제조사, 모델명, 규격 등에서 동일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위 회시서 내용과 동일하게 HSK 7222.20-0000호로 변경하여 부족하게 신고·납부한 관세 00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8.12.24.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세 00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 1.8. 이를 거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참고로 청구법인은 위 관세 및 부가가치세와 함께 수정신고·납부한 가산세 000원에 대해서도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인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관세법」 제51조에 의하면, 덤핑방지관세는 '외국의 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국내산업의 발전이 실질적으로 지연된 경우로 조사를 통하여 확인되고 해당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것이다.

그러나 쟁점물품은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된 사실이 없고,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 않아 보호할 해당 국내산업도 없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는 법률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

(2) 또한 쟁점물품은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인 '8. 자동차 및 유공압 솔레노이드밸브용 패삭스테인리스 스틸바 원형강(ASK200)으로서 지름이 8mm 이하인 것'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덤

평방지관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세번, 규격, 형태 등이 「일본·인도 및 스페인산 스테인리스 스틸바에 대한 덤프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하 「덤프방지관세 부과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덤프방지관세 부과대상 요건을 충족하므로 덤프방지 부과대상 물품에 해당된다.

(2) 또한 쟁점물품은 볼펜 팁(볼펜 끝에 잉크 나오는 길이 1cm 내외의 직선으로 된 금속 부분)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 덤프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인⁸. 자동차 및 유공압 솔레노이드밸브용 패삭 스테인리스 스틸바 원형강(ASK200)으로서 지름이 8mm 이하인 것⁹과는 그 용도를 달리하고 있어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결국 덤프방지관세 부과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덤프방지관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시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물품의 수입신고서 등에 의하면, 쟁점물품은 000이고, 직경 2.3mm ×길이 11.7mm의 ‘Stainless Steel Wire’이며, 그 용도는 볼펜용이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제시한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시서’에 기재된 물품의 품명은 ‘Bars and rods(not further worked than cold-formed or cold-finished ; Stainless Steel Wire ; Japan)’이고, 철 주성분에 탄소 0.05%, 크롬 19.99% 등을 함유한 직경 2.3mm ×길이 11.55mm로, 그 용도는 볼펜팁(촉) 용이며, HSK 제7222.20-0000호에 분류된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과 ‘품목분류 사전심사 회시서’상 물품이 제조사, 모델명, 규격 면에서 동일한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2018.11.28. 관세 등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정상가격 이하로 수입된 사실이 없고, 국내에서 생산이 되지도 않아 보호할 해당 국내 산업도 없으므로 덤프방지관세 부과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가사 부과대상 물품이라 하더라도 제외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덤프방지관세는 수입으로 인한 실질적 피해 등을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공급자 또는 공급국 별로 덤프방지관세율 또는 기준수입가격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여 부과하고 있는데, 쟁점물품은 세번, 규격, 형태 등이 「덤프방지관세 부과규칙」 제2조에서 정한 덤프방지관세 부과대상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볼펜촉 가공에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000과 그 용도가 달라 쟁점물품을 「덤프방지관세 부과규칙」 제2조 단서 조항에 따른 [별표 1]에 게시된 ‘덤프방지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 주장과 달리 쟁점물품은 덤프방지관세 부과대상 물품으로 보이고, 따라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한편 가산세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심판청구대상인 거부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관세법」 제131조와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